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9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정준호·박희승·서미화

이기헌 • 이춘석 • 윤종군

최기상 · 복기왕 · 문진석

이연희 • 박용갑 • 안태준

이학영 · 임호선 · 염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빈집이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 (구도심)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빈집의 활용이야말로 도시재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파악된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의 숫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대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만2120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빈집은 범죄·화재·붕괴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비용은 시간이경과할 수도록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빈집의 철거, 매입, 수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

인하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빈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하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빈집정보시스템으로"를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 빈집정보시스템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	6		
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			
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u>빈집정보시스템으로</u>	<u>빈집의 소재지, 노</u>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후도, 매매정보 등 빈집정보시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u>스템으로</u>		
할 수 있다.			